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313
----------	-------

발의연월일 : 2026. 1. 26.

발 의 자 : 조인철 · 박용갑 · 박희승
서천호 · 한정애 · 정준호
민형배 · 이해민 · 안도걸
박수현 · 박지원 · 박지혜
이정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으로 전기통신망을 통한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기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 보호의 중요성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현행 규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통보의 시점과 구체적 절차, 통지 내용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 및 관계 당국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고, 예기치 못한 서비스 장애나 산업 전반의 연쇄적 피해 및 이용자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행위의 내용과 사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추가 조치를 요청하여 관련 당사자들이 충분한 사전 준비와 위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의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
 2. 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 시스템 확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 ----- ----- ----- ----- ----- ----- ----- ----- ----- ----- ----- ----- <u>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u> ----- ----.
<신 설>	1. <u>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행위 30일 전까지 조치의 내용과 이유를 과학기술정보통신</u>

<u><신 설></u> <u><신 설></u> ②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받은 자료의 보호 및 폐기에 관 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u>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u> <u>통지</u> 2. <u>영업시간 중에 이용자 요구</u> <u>사항을 한국어로 접수할 수</u> <u>있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u> <u>처리 시스템 확보</u> 3.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는 사항</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용 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가 통신사업자에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제5항----- ----- ----- ----- -----.
--	---